정신문화연구 2008 가을호 제31권 제3호(통권 112호) pp. 273~304.

研究論文

조선후기 궁방(宮房)의 실체*

조 영 준**

Ⅰ. 머리말
Ⅱ. 궁방에 대한 기존인식과 문제점
Ⅲ. 궁방의 개념과 분류
Ⅳ. 1사4궁의 소재와 내부 공간
Ⅴ. 1사4궁의 조직과 인적 구성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Ⅰ. 머리말

한국사의 전근대에 해당하는 조선시대에 있어서는, 소위 "궁(宮)·부(府)의 재정이 서로 혼효(混淆)"되어 있었다고 표현되듯이,[1] 정부재정이 왕실재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조선시대의 국가재정이 근대경제학적 개념인 정부의 세출입에 한정되지 않았던 이유는 '왕실의 존재' 때문이다. 조선 정부는 왕토사상의 기반 위에서, '궁부일체(宮府一體)'의 이념에 따라 재정을 운영하고자 하였다.[2] 그 결과, 왕실재정까지 정부재정에 제도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왕실의 유지를 위해 수요되는 물자들을 정부재정을 통해서만 공급하기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19世紀 王室財政의 運營實態와 變化樣相」(서울대학교, 2008)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BK21사업단 박사후연구원, 한국경제사 전공(miricom1@snu.ac.kr).

1) 和田一郎, 『朝鮮土地地稅制度調査報告書』(朝鮮總督府, 1920), 574쪽.

2) 궁중과 부중이 하나라는 의미의 '궁부일체'는 제갈량이 「출사표」에서 "宮中府中俱爲一體"라 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는 사실상 어려웠다. 왕실에 대한 공상(供上)은 공물(貢物)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정식화(定式化)라는 제약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장기에 걸쳐 고정적인 경향이 강했다. 따라서 시기에 따라 임시적으로 변동하거나 또는 정부의 통제 밖에 존재한 왕실의 수요는 공물만으로 충족되기 힘들었다. 이에 고려~조선에 걸친 역대 왕조는 정부재정과 별도의 내탕(內帑)을 두었고, 이를 방치 또는 조장하였다. 내탕의 필수불가결성은 왕실에 의해 수시로 강변되어 왔으며, 여기에 대하여 이념과 제도를 고수하고 정부의 재용(財用)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측의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조선시대의 국가재정, 즉 정부재정 및 왕실재정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위해서 내탕에 대해 고찰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조선전기에 대해서는 왕실의 유지 수단이 기본적으로 직전(直田)이었다는 점으로 인하여, 내수사(內需司)를 중심으로 한 연구만으로도 왕실의 재정운영을 어느 정도 복원할 수 있는 반면,[3] 임진왜란 이후 직전법이 소멸한 조선후기에 있어서는 궁방(宮房)의 존재가 문제시된다는 점에서 조선전기와는 사정이 다르다.[4]

조선후기 궁방의 운영은 궁방전(宮房田)의 지급과 그에 대한 면세(免稅)라는 경제적 기반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에 기존의 궁방 연구는 궁방전의 확대와 경영 또는 수세에 관한, 특히 면세결을 위주로 한 분석이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궁방 그 자체에 대해서는 단편적 정보만이 거론되었을 뿐,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궁방이 과연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지 못한 결과, 궁방, 궁방전 및 왕실재정에 관한 연구는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5]

조선후기의 사회경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궁방이 중요한 연구대상 중의 하나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비단 궁방전의 확보와 경영 또는 농민과의 관련 뿐 아니라, 재정지출 과정에서 시장을 통한 상인과의 거래, 서울 주민의 일원으로서 궁속(宮屬)의 존재형태, 궁중의 의식주를 비롯한 일상생활 등 다방면에 걸쳐 궁방은 강력

3) 조선전기의 내수사에 관한 최근의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宋洙煥, 『朝鮮前期 王室財政 硏究』(集文堂, 2002); 梁擇寬, 「朝鮮前期 王室의 土地所有와 經營」, 『韓國史論』, 53(2007), 13~60쪽.

4) 이하의 논의에서 별도로 거론하지 않고 '궁방'이라고 표현한 경우, 내수사를 포함한다.

5) 주지하듯이 궁방전에 관한 연구는 1960~80년대에 다수 산출되었다. 1990년대 이후의 대표적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金載昊, 「韓末 宮房田의 地代: 『國有地調査書抄』의 分析」, 김홍식(외),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민음사, 1997), 249~296쪽; 趙映俊, 「18世紀後半~20世紀初 宮房田의 規模, 分布 및 變動」, 『朝鮮時代史學報』, 44(2008a), 175~223쪽.

한 설명변수가 된다. 이는 궁방이 서울을 중심으로 운영된, 무시할 수 없는 경제주체였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조선후기의 왕실재정과 사회경제에 대한 보다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데 기여하고자, 종래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궁방 그 자체에 관한 제도적 분석을 진행하는 것을 연구과제로 한다. 자료가 허락하는 한 실증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조선후기 궁방의 실체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것이며, 궁방에 관한 기초적 정보의 축적을 통해 궁방 운영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먼저 궁방에 대한 기존인식을 검토한 후,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궁방의 개념 정의와 분류를 새롭게 함으로써 내수사 및 각궁(各宮)의 기능적 측면을 부각시킬 것이다. 연후에 내탕 기능을 수행한 1사4궁을 중심으로 하여 그 소재(所在)와 내부 공간, 조직과 인적 구성 등에 관한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II. 궁방에 대한 기존인식과 문제점

궁방에 대하여 현재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인식은 식민지기에 일본인에 의해 형성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즉, 궁방에 관한 대표적 조사기록인『朝鮮土地地稅制度調査報告書』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 보고서는 와다 이치로(和田一郎)가 토지조사사업의 시행 이후에 작성한 것으로서,[6] 표제를 통해 파악되듯이 궁방 그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대표적 국유지[帝室有地]의 하나였던 궁방전에 대해 조사·기록하는 과정에서 궁방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도 부수적으로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18~19세기에 걸쳐 상시적으로 40처 이상에 달했던 궁방의 수는 갑오개혁을 거친 20세기 초에 들어서면 10처만이 잔존하였다. 이들을 소위 1사9궁(一司九宮)이라 하는데, 바로 내수사, 수진궁(壽進宮), 명례궁(明禮宮), 어의궁(於義宮), 용동궁(龍洞宮), 육상궁(毓祥宮), 선희궁(宣禧宮), 경우궁(景祐宮), 경선궁(慶善宮), 영친왕궁(英親王宮)이다. 그 중에서 경선궁과 영친왕궁은 대한제국기에 신설된 것으로서

6) 와다 이치로에 대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OI: NIKH.DB-im_215_14136)를 참조할 수 있다.

역사가 짧은 반면에, 나머지 1사7궁은 역사가 길 뿐만 아니라, 보유한 궁방전의 규모도 상당히 컸다. 따라서 궁방전에 대한 와다 이치로의 관심도 1사7궁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으며, 1사7궁의 성격에 대한 그의 이해는 <표 1>과 같았다.

<표 1> 1사7궁의 성격에 대한 와다 이치로의 이해

분류	성격
내수사	왕실의 내수(內需)를 담당한 하나의 **궁중직사(宮中職司)**
수진궁・명례궁・어의궁・용동궁	후(后), 빈(嬪), 왕자(王子) 등의 **사유재산을 보관한 고(庫)**
육상궁・선희궁・경우궁	국왕의 사친(私親)을 **봉향하는 묘(廟)**

출전: 和田一郎, 앞의 책, 123~124쪽.
주: 강조는 필자에 의함.

와다 이치로는 이와 같은 분류의 근거로서 각궁에 대해 보다 자세한 해설을 한 바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이 『臨時財産整理局事務要綱』에 수록된 '1사7궁의 연혁 및 성질'과 동일한 것으로 보건대, 황실재산의 정리과정에서 조선총독부가 조사한 내용을 이후에 와다 이치로가 무비판적으로 답습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내용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 2> 1사7궁의 연혁 및 성질

기관명	연혁 및 성질
내수사	개국초에 설치. 왕실의 내수에 관계된 쌀, 베 및 잡물, 노비의 일을 담당한 곳. **궁중재정기관의 하나**에 속함.
수진궁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전 제안대군[睿宗王子]의 사저. 대군이 훙거한 후에 그 사판(祀版)을 이곳에 봉안한 이래로 미봉작(未封爵)의 왕자, 대군 또는 미결혼(未結婚)의 공주, 옹주 및 무사속(無嗣續)의 후궁 등의 제사는 모두 이 궁에서 봉향함을 항례로 삼았음. 그 재산은 후년에 이르러 **황후소용(皇后所用)의 내탕**으로 이속됨.
명례궁	원(元) 경운궁(慶運宮). 원래 **황후소용의 내탕**에 속함. 창설연대는 미상. 지금으로부터 317년전 1593년[癸巳]에 선조(宣祖)가 한 번 회란(回鑾)한 후에 다시 복어(復御)됨. 후년에 이르러 인목왕후(仁穆王后)도 역시 이 궁에서 퇴소(退所)됨.
어의궁	지금으로부터 약 250~60년전에 인조(仁祖)의 사저였음. 그 후 **황후소용의 내탕**에 속함.
용동궁	지금으로부터 약 340~50년전에 명종(明宗)의 장남 순회세자의 구궁(舊宮)이었음. 그 후 **황후소용의 내탕**에 속함.
육상궁	숙빈최씨[英祖私親]의 **제사를 봉향**하는 곳. 1725년[英祖元年]에 창설됨.

선희궁	영빈이씨[莊祖私親]의 **제사를 봉향**하는 곳. 1762년[英祖38年]에 창설되었고, 의렬묘(義烈廟)라 칭했음. 1788년[正祖12年]에 선희묘(宣禧廟)로 개칭하였기에 선희궁이라 부르게 되었음. 1860년[開國469年]에 이곳을 폐지하고 육상궁에 합하였으나, 1897년[光武元年]에 다시 중건함.
경우궁	수빈박씨[純祖私親]의 **제사를 봉향**하는 곳. 1823년[純祖23年]에 창설됨.

출전: 『臨時財産整理局事務要綱』(朝鮮總督府 臨時財産整理局, 1911), 21~23쪽; 和田一郎, 앞의 책, 578~579쪽.
주: 서력연대 및 강조는 필자에 의함.

<표 2>의 내용은 대체로 <표 1>과 마찬가지로서, "육상궁, 선희궁 및 경우궁의 3궁은 왕실의 사묘(私廟)"이고, "어의궁, 수진궁, 명례궁, 용동궁의 4궁은 왕실의 사고(私庫)"라고 평가하고 있다.[7] 다만 4궁의 구체적 성격에 있어서는 양자에 미묘한 차이점이 있다. <표 1>에서는 4궁을 각각 "후, 빈, 왕자의 사고"라 한 반면에, <표 2>에서는 모두 "황후소용의 내탕"으로 보고 있다. 이는 4궁에 대한 와다 이치로의 인식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식민지기 일본인의 조사기록이 정합적이지 못한 이유는 대체로 그 조사의 궁극적 대상이 궁방 소유의 부동산(궁방전)이었고, 궁방 그 자체는 부차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궁방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섭렵하여 종합한 것은 아니며, 주로 『經國大典』, 『續大典』, 『大典會通』 등의 법전류나 『增補文獻備考』 등의 관찬사료에 등장하는 단편적인 기술에 의존하는 수준에 한정되어 있었다.[8] 보다 후대의 연구에서도 궁방에 대한 해설 내용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9] 궁방에 대한 이해는 『臨時財産整理局事務要綱』의 수준에서 답보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10]

---

7) 『臨時財産整理局事務要綱』, 23쪽; 和田一郎, 앞의 책, 579~580쪽.

8) 『臨時財産整理局事務要綱』, 23쪽.

9) 小田省吾, 「德壽宮略史」, 『朝鮮』, 제234호(1934), 75~76쪽.

10) 궁방에 대한 이해수준은 해방 이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궁방전에 관한 1970년대의 연구에서 궁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시도되었고[朴廣成, 「宮房田의 硏究: 그 展開에 따른 民田侵及과 下民侵虐을 中心으로」, 『(仁川敎育大學) 論文集』, 제5집(1970), 7쪽], 1980년대에 간행된 일련의 해제를 통해 궁방에 대한 해설이 행해진 바 있다[『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제V집(史部2)』(서울大學校圖書館, 1982);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제VI집(史部3)』(서울大學校圖書館, 1983); 「龍洞宮謄錄 解題」, 『龍洞宮謄錄』(正文社, 1982)]. 이들 해제에서 소개되고 있는 궁방에 관한 정보는 와다 이치로가 정리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후의 궁방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이들 해제를 무비판적으로 인용하거나[李政炯, 「17·8세기 궁방의 민전 침탈」, 『釜大史學』, 제20집(1996), 81~82쪽, 90쪽, 111쪽], 궁방의 성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궁방의 경제활동(주로 수취활동)에 대한 연구가 다수 산출되어 왔지만, 개별 궁방에 대한 이해의 깊이는 더해지지 못한

식민지기 이래 현재까지 기존연구의 궁방에 대한 이해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궁방에 대한 이해는 1사7궁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달리 말하면, 조선후기에 평균적으로 40처 이상에 달하였으나 갑오개혁을 전후하여 사라진, 전체 궁방에 대한 해설은 시도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황실재정정리 및 토지조사사업에서 1907년까지 존속한 1사7궁만이 조사 대상으로 성립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4궁이 실제로 "왕후소용의 내탕"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의, 즉 궁방이 폐지되기 직전의 특정 시기에만 적용될 수 있는 사실이다. 궁방의 기원과 20세기 초의 성질은 파악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궁방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시간적 주무대인 18~19세기에 걸친 궁방의 기능(또는 연혁)에 대한 이해는 공백으로 남아있다.

셋째, 궁방에 대한 기존인식은 몇몇 관찬문서에만 의존하였기에, 그 근거가 박약했다. 따라서 지극히 피상적인 이해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궁방의 구체적인 실체 또는 궁방이 영위한 경제행위의 실상 등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III. 궁방의 개념과 분류

1. 궁방의 개념

궁방의 실체를 구명하기에 앞서 먼저 궁방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기존연구에서 궁방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식민지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조사자료 또는 연구에 제시되어 있는 궁방의 개념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궁방은 "후궁, 대군, 공주, 옹주 등의 존칭"이다.[11] 이는 "이조(李朝)에 있어서는 후궁, 대군, 공주, 옹주 등을 존칭하여 궁방이라 불렀"다는 식민지기 조사의 인식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12] 조선시대 전시기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궁방

것이다.

11) 元永喜, 『韓國地籍史(三訂版)』(新羅出版社, 1981), 95쪽.

의 추상적 개념을 강조한 것으로서, 후궁 등에게 부여된 궁호(宮號)를 궁방과 동일시하는 차원에서의 정의로 평가할 수 있다.[13]

둘째, 궁방은 "왕궁에 준하는 궁전"이다.[14] 궁방은 사실상 전궁(殿宮)은 아니지만,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이와 같은 인식도 가능하다. 건물을 중심으로 한 표현인 '궁실(宮室)'이나 '궁궐(宮闕)'의 범주에 궁방을 분류하기도 했다.[15] 궁방의 가사(家舍)를 '궁가(宮家)'라 한 것도 궁호를 부여 받은 자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16]

셋째, 궁방은 "왕실의 일부인 궁실과 왕실로부터 독립한 또는 왕실에 관계 깊은 궁가"이다.[17] 기존의 인식 중에서는 가장 포괄적으로 정의된 궁방의 개념이지만, 왕실과의 관계를 "왕실의 일부", "왕실로부터 독립", "왕실에 관계 깊은" 등으로 구분하기에는 그 범주가 모호한 면이 있다.

이와 같이 궁방의 개념에 대한 인식이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타당하지만 궁방의 실체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왕실에 소요되는 물자의 조달업무를 담당한 궁방의 '기능적' 측면들이 간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왕실의 재정운영 측면에서 궁방의 기능을 포괄하는 개념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

조선전기의 '궁방'은 단순히 '궁'과 '방'의 합성어로서,[18] 전술한 "후궁, 대군, 공주, 옹주 등의 존칭"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조선시대사에서 궁방의 역할이 중요하게 자리잡는 것은 직전제 폐지로 인하여 궁방전이 새롭게 창출되는 임진왜란 이후에 해당하므로, 궁방에 대한 정의는 '조선후기의 궁방'에 대한 것이어야 할 것

12) 和田一郎, 앞의 책, 578쪽.

13) 본래 '○○宮'이란 후궁 등에게 부여된 궁호이지만, 사후에 묘호(廟號)로서 격상된 명칭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표 2>의 의렬묘, 선희묘 등이 묘호이고, 선희궁은 궁호이다. 또 순조의 생모인 수빈박씨[嘉順宮]의 묘호(궁호)는 경우궁이다.

14) 『京城府史: 第1卷』(京城府, 1934), 73~76쪽, 359~360쪽.

15) 和田一郎, 앞의 책, 498~505쪽; 『東國輿地備攷(第2版)』(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2000), 7~24쪽.

16) 민간에서는 '궁가'를 '궁집'이라 칭했다. 주남철, 『궁집[宮家]』(일지사, 2003); 『궁집[宮家]: 韓國의 전통가옥 14』(문화재청, 2006).

17) 和田一郎, 앞의 책, 123쪽; 小田省吾, 앞의 논문, 71쪽.

18) '궁방'이라는 용어 자체만으로 판단하자면, 수진궁, 명례궁 등의 '○○宮'과 양녕대군방, 화협옹주방 등의 '○○房'을 통칭하는 것에 불과하다. 실례로 궁방이라는 용어가 『朝鮮王朝實錄』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15세기 초이다. 『太宗實錄』, 3년(1403) 11월 18일.

이다.[19] 조선후기의 궁방을 유의미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궁방의 재정운영에 있어서의 역할에 주목해야 하며, 결국 궁방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 다시 말해, '조선후기'라는 시대적 범주와 더불어 '재정기관'이라는 기능적 범주까지 설정한 후에야 비로소 궁방에 대한 실체적 정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기존의 논의에서 궁방의 개념 정의가 일률적이지 않은 것은 궁방의 범주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조선후기에 이른바 궁방이라 불리운 것들을 모두 종합하여 이를 기능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2. 궁방의 분류

궁방의 기본업무가 왕실의 생활자료를 공급하는 것임은 모든 궁방에 있어서 공통적이지만, 각 궁방이 모두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정도의 차이를 넘어선 기능의 차별화가 이루어져 있었다. 따라서 적절한 기준을 적용하여 궁방을 분류함으로써 궁방의 성격과 기능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와다 이치로의 견해로 돌아가 보면, 그는 조선의 '궁실'을 왕궁(및 그에 준하는 것), 제사궁(祭祀宮), 내탕의 3종으로 분류한 바 있는데,[20] 여기서의 제사궁과 내탕이 궁방에 해당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제사궁과 내탕을 다시 "왕실의 일부인 궁실과 왕실로부터 독립한 또는 왕실에 관계 깊은 궁가"라고 하면서, "전자는…수진, 명례, 어의, 용동의 4궁"이고, "후자는 대군, 공주, 왕자, 옹주, 군주 등의 궁가"라고 하였다.[21] 즉 4궁은 왕실의 일부인 궁실이고, 기타 궁가는 왕실에서 독립하였거나 왕실에 관계 깊은 곳이라는 설명이다. 이렇게 와다 이치로는 궁방을 분류함에 있어서 ① 제사궁과 내탕, ② 왕실로부터의 독립 여부(또는 관련성)라는 중첩된 기준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두 가지의 기준 모두 일률적으로 판단하

19) 조선후기에는 궁방을 줄여서 '궁'이라 하기도 하고, '궁가' 또는 '궁호'라고도 하며 여러 표현을 혼용하고 있었다. 내수사와 궁방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대개 '궁사(宮司)' 또는 '사궁(司宮)'이라고 하였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궁방의 수까지 포함하여 '4궁1사'라고 하거나, 전술하였듯이 '1사7궁', '1사9궁' 등으로도 표현하였다. 그러던 것이 갑오개혁 이후 19세기 말에 이르러 '1사7궁'과 '궁방'을 거의 동의어로 쓰게 되었는데, 이는 내수사와 여타 궁방의 실질적 차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20) 和田一郎, 앞의 책, 501쪽.

21) 和田一郎, 앞의 책, 123쪽; 小田省吾, 앞의 논문, 71쪽.

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22]

이에 본 논문에서 궁방의 분류를 새로이 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서, 하나는 궁방의 존속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궁방의 기능이다. 존속기간에 의한 분류와 기능에 의한 분류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며, 존속기간과 기능은 상호 연관되어 있기도 하다. 우선 존속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각 궁방의 설립연대는 다를 지라도 1907년 폐지시점까지 존속한 궁방이다. 1사7궁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들 궁방은 일반적으로 18~19세기 또는 그 이전부터 존속해 왔기 때문에 '영구존속궁'이라고도 한다. 둘째, 1사7궁에 포함되지 않고 20세기까지 존속하지도 않았지만, 18~19세기부터 갑오개혁기까지 존속한 궁방이다. 이들은 대개 왕패(王牌)나 별사문적(別賜文蹟) 등을 보유한 곳들로서, 영구존속에 준하는 성격을 가진다. 셋째, 영구적으로 존속하지 않은 기타 모든 궁방이다. 이들 궁방은 신설과 폐지[置廢]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정한 생애주기(life-cycle)를 경험한다. 우선 해당 인물의 생시에 궁방이 신설되어 생활자료의 충당을 담당하고[設宮], 그가 죽으면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바뀌며[祭宮], 제사의 대수가 끝나면[代盡] 최소한의 규모로 축소 또는 폐지되거나[廢宮] 여타 궁방에 병합되는[合祀] 과정을 거친다.[23]

위와 같은 존속기간에 의한 구분과 동시에, 궁방은 그 기능에 따라서 다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왕실재정의 일부로 기능한 내탕으로서, 공물로 충당될 수 없는 왕실의 수요를 담당한 곳이다. 앞서의 영구존속궁 중에서 1사4궁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왕실 일족의 개인 또는 가계(家計)의 재정으로 기능한 궁방이다. 즉, 후궁, 대군, 공주 등 해당 인물의 생활자료를 공급하는 기능을 한 곳으로서, 1사7궁 이외의 모든 궁방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기능은 해당 인물의 생존시로 한정된다. 셋째, 제사궁으로 기능한 궁방이다. 사실상 모든 궁방은 제사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내탕의 기능을 한 1사4궁도 제수품의 조달을 담당하고 있었다. 내수사는 함흥·영흥의 양본궁(兩本宮)에 대한 제수품 조달을,

22) 예컨대, 왕실로부터의 독립 여부라는 기준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후궁의 경우 4궁에 속하지도 대군·왕자·공주·옹주에 속하지도 않고, 대군·왕자·공주·옹주의 경우에도 생존시와 사후의 구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3) 趙映俊, 앞의 논문(2008a), 194~195쪽.

수진궁은 합사된 여러 무사속의 후궁이나 왕자녀의 제향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명례, 어의, 용동궁에서도 제수품 조달이 이루어졌다. 즉 1사4궁은 내탕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왕실 의례에서 빠질 수 없었던 제사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에 육상궁·경우궁·선희궁의 3궁은 오직 제사만을 위해 설립된, 말 그대로 제궁(祭宮)이다. 기타 모든 궁방들의 경우에는 해당 인물의 사망시에 제궁으로 그 기능이 변하게 된다. 대개는 생존기간보다 제사를 지내는 기간[4代]이 더 길었기 때문에 제궁의 성격이 더 중요하였다. 즉 모든 궁방에 있어서 비중의 차이는 있으나 제사의 기능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 조선후기의 전체 궁방을 <표 3>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③으로 분류된 궁방이 ②나 ①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19세기 초까지의 사정에 해당하며, 19세기 전반(全般)에 걸쳐서는 세 가지 범주가 고정·불변이었다.

<표 3> 조선후기 궁방의 분류

		존속기간			
		영구 (①)		준영구 (②)	생애주기 (③)
기능	내탕	1사4궁*			
	제궁		제향3궁**	별사문적·왕패 보유†	후궁·대군·왕자·공주·옹주(사후)
	가계				후궁·대군·왕자·공주·옹주(생존시)

주: * 내수사, 수진궁, 명례궁, 용동궁, 어의궁. ** 육상궁, 선희궁, 경우궁. † 화순옹주방, 화평옹주방, 화협옹주방, 화령옹주방, 화길옹주방이 대표적임(『純祖實錄』, 23년(1823) 10월 14일).

이러한 분류 체계 속에서 왕실재정 본연의 기능은 오직 내탕의 기능을 수행한 1사4궁에 한정된다. 즉 왕실재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18~19세기의 한국경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은 영구존속궁의 일부인 1사4궁인 것이다.[24] 그렇다면 1사4궁은 어떤 기능을 어떻게 분담하고 있었던 것일까?

24) 물론 제향 기능을 담당한 3궁에 있어서도 '영구존속'화하는 과정에서 개입된 여러 조치를 통해 왕실정치상 유의미한 사실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대표적 연구로서 이현진, 「조선 영조대 육상궁의 조성과 그 운영」, 조선후기~대한제국기 양안의 정리 및 해설팀 중간발표회(『조선후기 宮房田과 宮房量案』), 서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8. 6. 24, 96~115쪽을 주목할 수 있다.

3. 1사4궁의 기능분담

1사4궁이 공통적으로 내탕과 제향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여기서는 내탕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1사4궁의 소관전궁(所管殿宮)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앞서 <표 1>과 <표 2>를 통해 4궁이 모두 "왕후소용의 내탕"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내수사가 대전(大殿)의 내탕이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25] 4궁이 '왕후' 소용의 내탕으로 '이속'되었다면, 그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사실상 조선후기의 4궁은 특정 전궁의 속궁으로서 고정·불변이었던 것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 소관전궁의 변동을 겪는 방식으로 윤회되고 있었다. 우선 17~18세기의 『朝鮮王朝實錄』에서 찾을 수 있는 4궁의 소관전궁에 관한 내용을 발췌한 <표 4>를 살펴보자. 4궁이 각각 대왕대비전, 왕대비전, 중궁전, 동궁 등 여러 전궁의 내탕 역할을 번갈아 수행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예컨대, 가장 자료가 충실한 명례궁의 사례를 살펴보면, "慈殿→中殿→大妃殿→大王大妃殿→兩慈殿→東宮"으로 시기에 따라 수시로 소관전궁이 변동되는 양상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26]

<표 4> 4궁의 소관전궁 (17~18세기)

자료	수진궁	명례궁	용동궁	어의궁
①		慈殿所屬		
②	慈殿所屬			
③		慈殿所屬		
④	大王大妃	中殿		王大妃
⑤		自前爲大妃殿私財		
⑥		大王大妃殿所屬		
⑦	兩殿(兩慈聖)所屬		中宮所屬	
⑧	兩慈殿供上			
⑨			禁中私帑	
⑩	無後大君王子公主 後宮奉祭之所			
⑪		兩東朝所管		

25) 『顯宗改修實錄』, 4년(1663) 9월 5일.

26) 명례궁이 동궁 소관이었던 시기는 정조(正祖)가 세손으로 책봉된 후 즉위하기 전까지이다.

⑫		東朝		
⑬		屬於東宮		
⑭		東宮別帑		
⑮		冊封後劃明禮宮爲屬宮		
⑯			慈宮補用錢	

출전: ①『仁祖實錄』, 2년(1624) 7월 30일; ②『仁祖實錄』, 5년(1627) 7월 4일; ③『仁祖實錄』, 7년(1629) 11월 18일; ④『顯宗改修實錄』, 4년(1663) 9월 5일; ⑤『肅宗實錄』, 1년(1675) 9월 18일; ⑥『肅宗實錄』, 7년(1681) 1월 3일; ⑦『肅宗實錄』, 9년(1683) 1월 21일; ⑧『肅宗實錄』, 9년(1683) 7월 25일; ⑨『肅宗實錄』, 10년(1684) 3월 17일; ⑩『景宗實錄』, 1년(1721) 2월 21일; ⑪『英祖實錄』, 5년(1729) 1월 9일; ⑫『英祖實錄』, 9년(1733) 2월 20일; ⑬『正祖實錄』, 부록, 행장; ⑭『正祖實錄』, 부록속편, 천릉지문;『純祖實錄』, 21년(1821) 8월 7일, 천릉지문(효의왕후); ⑮『正祖實錄』, 1년(1777) 3월 2일; ⑯『正祖實錄』, 3년(1779) 10월 25일.

4궁의 소관전궁이 변동하는 양상은 19세기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였다. 19세기의 『朝鮮王朝實錄』에서는 4궁의 소관전궁이 거론된 기사를 찾을 수 없으나, 4궁의 회계장부에 보이는 최종결재처의 변화를 통해 소관전궁의 변동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예컨대, 이전 시기와는 달리 1882~1906년간 『壽進宮上下冊』(奎 19030)의 최종결재가 달자인(達字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음은 이 시기에 세자궁(동궁)에 의한 회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 즉 수진궁이 세자궁의 속궁이었음을 뜻한다.[27] 또한 갑오개혁을 전후로 한 자료에 의하면, 수진궁은 빈궁, 명례궁은 왕비, 용동궁은 대왕대비, 어의궁은 왕대비의 속궁이었음이 확인된다.[28] 따라서 4궁이 공통적으로 "왕후소용의 내탕" 기능을 수행하였다면, 그 시기는 적어도 갑오개혁 이후이다.[29] 즉 기존의 인식과 같이 4궁을 모두 일률적으로 "왕후소용의 내탕"으로 분류하는 것은 조선후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없으며,[30] 이들 사이에는 소관전궁의 윤회라는 방식의 기능분담이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다.

27) 趙映俊,「宮房 會計帳簿의 體系와 性格」,『古文書硏究』, 32(2008b), 196쪽.

28) 『結戶貨法稅則』(奎 古5127-10). 또한 『帝室債務整理之現況』('各宮ノ性質')에서는 수진궁을 "황태자·황태자비의 내탕"이라 하고 있다.

29) 또한 "왕후소용의 내탕"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중궁전에만 물자를 조달했던 것은 아니다. 『各處商民等請願書』(奎 21072)에서 "本宮[명례궁]은 御供進排와 景孝殿享需를 自來專擔擧行矣러니"라 하였는데, 이는 명례궁이 왕비 사후에 경효전의 향수를 조달하는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어공의 진배까지 담당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30) 참고로 金用淑,「明禮宮 硏究: 그 始源 糾明을 중심으로」,『서울문화』, 제3집(1997), 92~93쪽에서는 영조대(英祖代)와 고종대(高宗代)의 용동궁이 세자빈의 내탕임을 밝히고 있다.

Ⅳ. 1사4궁의 소재와 내부 공간

1. 1사4궁의 소재

1사4궁이 모두 내탕으로서 소관전궁에 대한 물자공급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도성 내의 어느 위치에 자리잡고 어떤 내부 공간을 갖추고 있었을까?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에 있어서 1사4궁의 소재는 여러 기술사료와 고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31] 우선 기술사료에 나타난 1사4궁의 위치 정보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32] 18~20세기에 걸쳐 내수사, 수진궁, 명례궁의 위치는 변동이 없었지만, 용동궁, 어의궁의 위치는 20세기 초에 이동되었음이 확인된다.

<표 5> 1사4궁의 소재

기관명	18~19세기*	20세기 초**	옛터[舊址]의 현 위치
내수사	西部仁達坊		종로구 내수동
수진궁	中部壽進坊	中部壽進坊	종로구 수송동
명례궁[慶運宮]	西部皇華坊	西部皇華坊	중구 정동(덕수궁 내)
용동궁	西部皇華坊	當初西部皇華坊, 今中部壽進坊	종로구 수송동
어의궁[上於義宮]	中部慶幸坊	初中部慶幸坊, 後西部仁達坊	종로구 사직동

출전: *『宮闕志』(5) 都城志;『東國輿地備攷』(1) 京都;『漢京識略』(1) 廟殿宮;『增補文獻備考』(38) 輿地考26, (61) 禮考8;『大東地志』(奎 古4790-37). **『臨時財産整理局事務要綱』, 21~23쪽.

기술사료가 전하는 1사4궁의 위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고지도의 활용을 통해 가능하다. 18세기 중엽 이후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1사4궁의 위치를 수록하고 있는 지도는 상당히 많은 편이다.[33]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18세기 중엽의 지도인 규장각 소장의 「都城圖」를 부분적으로 제시하면 <그림

31) 18세기 중엽 이전의 1사4궁의 위치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힘든데, 특히 명례궁과 같이 위치가 옮겨진 경우에 대해서는 더욱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위의 논문, 80~86쪽.

32) 이와 같이 기술사료만 가지고 각 궁방의 소재를 판단하는 데에는 두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당시 한성부의 행정구역 편제는 부방제(部坊制)로서 부(部)—방(坊)—계(契)—동(洞)—통(統)—호(戶)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방(坊) 수준까지의 정보만 알려주고 있고, 방 이하의 단위인 계(契)나 동(洞)의 구체적인 위치는 제공하지 않는다. 둘째, 18~20세기의 정보에 한하고 있어 18세기 이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33) 李燦·楊普景,『서울의 옛 地圖』(서울학연구소, 1995); 許英桓,『定都 600年 서울 地圖』(汎友社, 1994).

<그림 1> 내수사, 수진궁, 명례궁, 용동궁의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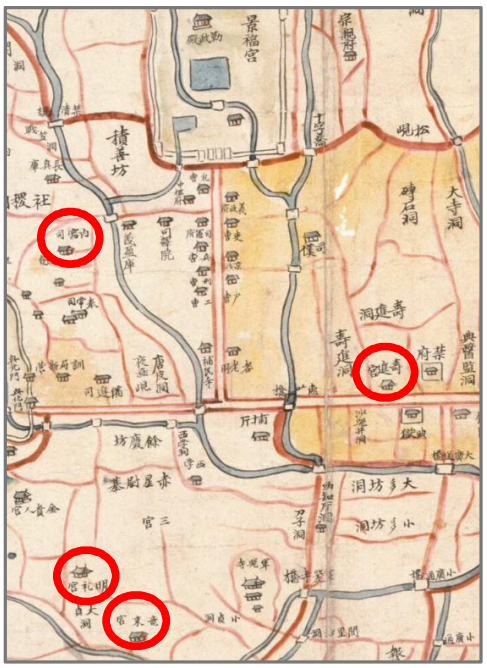

출전: 『輿地圖』(奎 古4709-78), 「都城圖」.

1>과 같다. 타원으로 표시한, 내수사, 수진궁, 명례궁, 용동궁의 위치가 한 눈에 확인되며,[34] 각 위치는 <표 5>의 정보보다 구체적이다. 내수사, 명례궁, 수진궁의 경우, 19세기 초엽의 지도에서도 위치에 변함이 없었다.[35] 20세기 초의 상황은 『漢城府地圖』에서 엿볼 수 있는데,[36] 명례궁은 경운궁으로 바뀌어 있고, 수진궁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내수사의 위치가 "內需寺ᄂᆡ슈ᄉᆞ"로 표기되어 여전히 확인되고 있다.[37]

이처럼 1사4궁이 도성 내의 요지에 위치해 있었기에, 각 전궁에 물품을 조달하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38] 또한 주요 물품의 구입처에 해당하는 시전이 밀집해 있던 종로와의 인접성도 거래비용을 절

34) 어의궁의 위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작성연대가 1753~1759년간으로 추정되는[이상태, 「도성대지도에 관한 연구」, 『都城大地圖』(서울역사박물관, 2004), 72쪽],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의 『都城大地圖』에서는 내수사, 수진궁, 명례궁의 위치만이 확인된다.

35) 내수사, 명례궁, 수진궁의 위치를 수록한, 19세기 초엽의 지도 중 대표적인 것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首善全圖』(國中 한古朝61-47)가 있다. 작성연대는 1825년(순조25년)경으로 추정되는데, 용동궁이나 어의궁은 표시되어 있지 않다.

36) 『漢城府地圖』의 작성연대는 1901년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李燦·楊普景, 앞의 책, 149쪽; 리진호, 『한국지적史』(바른길, 1999), 356~359쪽.

37) 물론 고지도를 통한 소재 확인은 해당 지도들이 근대적 실측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위치를 세밀하게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는 데에는 20세기의 조사 기록이 유용하다. 예컨대, 『京城府史: 第1卷』, 75쪽에 의하면, 수진궁의 위치는 "中部 壽松坊 現 壽松洞 五三番地 鍾路公立小學校敷地 東北方의 一部"였다.

38) 국초부터 설치·운영된 내수사를 제외하면, (익명의 심사자 중 한 분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4궁은 대군·왕자방 또는 (왕의) 잠저로 기능하던 곳이 추후에 왕실의 재정을 담당하는 곳으로 변모하였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재정 기능을 염두에 두고 입지(立地)를 선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 둔다.

감하는데 일조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2. 1사4궁의 내부 공간

해당 위치에 소재하였던 1사4궁의 규모와 건물 구성, 즉 내부 공간은 어떠하였을까? 우선 규모에 대해 고찰해 보자. 1사4궁의 건물이 현존하는 사례가 없어서 기존 연구에서는 터[址]를 기준으로 규모를 짐작하는데 그쳤으나,[39]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자료로서 수진궁과 용동궁의 건물 및 부속토지의 규모를 수록하고 있는 「壽進宮及龍洞宮建物附屬土地調査報告」를 참고할 수 있다.[40]

수진궁 폐지 후의 건물 및 부속토지는 흥사단에 대여되었는데, 건물의 총 칸수[間數]는 210칸으로 본청(本廳) 15칸, 부속사(附屬舍) 156칸, 고사(庫舍) 39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공지(空地)와 택지를 포함한 전체 면적은 1,000평 내외였다.[41] 용동궁도 마찬가지로 폐지 후에 (경성)고아원에 대여되었는데, 건물의 총 칸수는 156칸으로 본청 10칸, 부속사 105칸, 고사 41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공지와 택지를 포함한 전체 면적은 1,500평 내외였다. 즉 약 1천평 가량의 면적에 사무공간으로 10여 칸, 창고로 약 40칸, 거주 등 기타 용도로 100여 칸의 건물이 들어서 있었던 것이 4궁의 대체적 구조라고 볼 수 있겠다.

이 조사보고에는 500분의 1 축척의 수진궁 실측도면이 함께 수록되어 있으며, 그대로 옮겨 그려 보면 <그림 2>와 같다. 여기서 따로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원자료에는 대문(大門), 중문(中門), 협문(夾門), 이문(裏門) 등의 문, 창고(倉庫), 누상고(樓上庫), 누하고(樓下庫) 등의 곳간, 기타 대청(大廳), 실방(室房), 판옥(板屋), 변소(便所), 공간(空間) 등이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아무런 표기도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수십 칸에 이르므로, 각 건물의 용도를 모두 복원하기는 어렵다.

1사4궁의 내부 공간이 어떤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었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찾을 수 없지만, 대체로 궁궐과 사가(私家=士大夫家)의 중간 정도

---

39) 金用淑, 앞의 논문, 102쪽.

40) 1910년 2월 19일에 작성되었으며, 『家舍에 關ᄒᆞᆫ 照覆文書』(奎 20945)에 합철되어 있다.

41) 제안대군이 살던 16세기 초의 수진궁 규모는 다른 왕자녀의 궁가보다 컸다[『中宗實錄』, 24년(1529) 5월 20일]. 하지만 이후에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인다[『中宗實錄』, 39년(1544) 4월 3일].

<그림 2> 수진궁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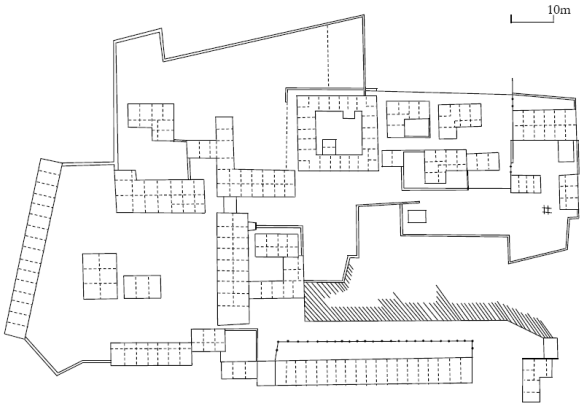

출전:『家舍에 關혼 照覆文書』(奎 20945),「壽進宮及龍洞宮建物附屬土地調査報告」.

의 성격을 가지면서, 동시에 아문(衙門)과 비슷한 성격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사례를 통해 실마리를 찾 수 있다. 수진궁의 아보도록 하자.

수진궁의 지출 내역을 기록한 회계장부인 『壽進宮上下冊』에는 수진궁에서 소비한 온돌목(溫堗木), 취반목(炊飯木), 등유(燈油), 창호(窓戶), 집물(什物), 탄(炭), 장목(長木) 등의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수진궁은 "書題所奴子上直房"에 매월 온돌목 용도의 시목(柴木)을, 또 조명용의 등유를 지출하였다. 또 서제소(書題所)에 연 1회 노탄가(爐炭價) 용도의 벼[租] 5섬[石]을 공급하였다. 이와 같은 기록은 수진궁 내에 서제소가 있었고, 거기에 노자(奴子)들이 당직 또는 숙직을 하는 곳[上直房]이 있었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서제소란 어떤 곳이었을까?

16세기의 기록에서 왕자녀의 집에 대개 있었다고 하는 장무소(掌務所)[42]나 17세기의 지도에서 보이는 서계소(書計所)[43]가 서제소의 원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8세기의 기록을 보면, 서제소는 잡물을 받자[捧上]하는 업무를 맡은 곳이라 하였으며,[44] 명례궁에 부속되어 있었던, 인조(仁祖)가 즉위한 즉조당(卽阼堂)도 다름 아닌 서제소였다.[45] 서제소는 각궁에 있었으며,[46] 물자의 출납을 관리, 감독하고, 각종 장부의 작성을 하며, 제관(祭官)이나 노자들이 돌아가며 상직(上直)한 곳이다. 서제소 내에 받자빗[捧上色]이라는 부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47] 받자[捧上], 차하

42)『中宗實錄』, 33년(1538) 7월 29일.
43)「麟坪大君坊全圖」(奎 古軸4655-6). 李燦・楊普景, 앞의 책, 95쪽에서 재수록.
44)『承政院日記』, 1729년 11월 27일. "大抵書題所例有雜物捧上之事."
45)『承政院日記』, 1769년 11월 2일. "癸亥卽位之處卽是明禮宮書題所."
46)『壽進宮謄錄』(玄), 1824년(甲申) 5월 일. "各宮書題所 前私通."

[上下] 등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48] 즉 4궁이 내탕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핵심적인 기능을 한 곳이 바로 이 서제소로서, 소차지 이하 장무(掌務), 즉 소임(所任)의 사무공간이었다.

수진궁이 내탕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내부 공간 중의 또 하나는 창고이다. 『壽進宮上下冊』에서는 궁의 창고를 '宮庫舍'라 적고 있는데, <그림 2>의 창고, 누상고, 누하고 등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왕실소용의 물자는 그 종류와 수량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데에는 다수의 창고와 관리 인력이 필요했다. 수진궁의 노자들 중에서 우두머리격에 해당하는 고직(庫直)이 고사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내탕과 더불어 수진궁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제향이었다. 따라서 수진궁 내에는 사당[廟]이 있었는데, 18세기 말에 5묘였고,[49] 이후 사판이 추가되어 19세기 중엽에는 8묘에 이르렀다.[50] 사당의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개와(改瓦)에 들어간 기왓장의 수가 부방초와(夫方草瓦) 150장(張), 여방초와(女方草瓦) 150장, 용두와(龍頭瓦) 2개(箇), 중와(中瓦) 3눌(訥), 상와(常瓦) 2눌이었던 것으로 미루어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는 있겠다.[51]

또한 수진궁은 '內人都廳'에 매월 취반목(炊飯木) 용도의 시목을 공급하고 있었다. 19세기 초의 수진궁에는 내인(內人) 10명이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대내인(大內人=上內人) 1명과 내인 9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52] 이들이 업무를 처리한 공간인 도청(都廳)이 있었고, 그곳에서 취반(炊飯)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또한 내인 1인당 매월 3~4동(同)의 시목을 온돌목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이들의 처소가 수진궁 내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즉 내인의 거처와 도청도 수진궁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다.[53]

---

47) 『壽進宮謄錄』(宙), 1854년(甲寅) 7월 일: 「粘甘」. "壽進宮書題所 捧上色書吏."

48) 또한 『景祐宮ニ供給セシ物品代金請求ノ件』(奎 20118)에서, 소차지(小次知) 명의로 발행한 채주(債主)에 대한 표지(票紙)의 증빙도 '景祐宮 書題所'의 인장을 통해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49) 『壽進宮上祭謄錄』(奎 19289); 『正祖實錄』, 22년(1798) 9월 7일.

50) 『各祠堂各墓所祭享新定式謄錄』(奎 19290).

51) 부방초와·여방초와는 대와계(大瓦契)에서, 용두와·중와·상와는 상와계(常瓦契)에서 진배(進排)하였다. 『壽進宮謄錄』(宙), 1853년(癸丑) 8월 일.

52) '內人'은 일반적으로 '나인'으로 읽지만, 본 논문에서는 金用淑, 『朝鮮朝 宮中風俗 硏究』(一志社, 1987), 11쪽의 "'內人'은 보통 '나인'으로 알고 있지만 궁중(宮中)에서는 '내인'과 같이 공용되며, 그들 자신들도 '내인' 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견해를 좇아 '내인'이라 표기하였다.

V. 1사4궁의 조직과 인적 구성

1. 1사4궁의 조직

이상에서 1사4궁이 단순히 재정운영을 위한 회계상의 단위가 아니라 특정 위치에서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기관의 운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구성과 인원의 출입상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사4궁의 조직 구성은 일찍이 김용섭이 소개한 바 있다.[54] 그에 따르면 "내수사나 궁방의 구조는 내무(內務)·외무(外務)의 두 계통으로 형성되고 외무계통은 내무계통에 의해서 관장(管掌)"되었다.[55] 내무계통은 "궁방의 예산·결산 및 궁방 상호간의 문제를 취급"하였는데, 내수사는 "전수(典需)·별좌(別坐)·부전수(副典需)·별제(別提)·전회(典會)·전곡(典穀)·전화(典貨)·서제(書題)"로, 궁방은 "당상(堂上)·차지(次知)·소차지·장무·서원(書員)·중사(中使) 또는 중관(中官)"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에게는 내수사나 궁방에서 "직접 그 보수가 지급"되었다. 반면에 외무계통은 "장토(庄土)를 위시한 지방의 각종 이권을 관리"하였는데, "도장(導掌)이나 궁차(宮差)·감관(監官)·마름[舍音] 등이 배속"되어 있었고, 이들에 대한 보수는 "소작료를 궁방에 납부하기 전에 거기에서 공제하여 지급"되었다. 외무계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실체가 알려진 바 있으나,[56] 내무계통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전무(全無)하다. 따라서 내무계통에 대한 기존연구의 이해 수준도 전술한 와다 이치로의 보고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57] 이에 4궁에 한정하여,[58] 특히 수진궁을 중심으로 내무계통의 인원 구성에

---

53) 『家舍에 關ᄒᆞᆫ 照覆文書』, 「壽進宮附屬家舍一座仍借於宋在恒事」에 의하면 수진궁 부속의 송재항 차주가(借住家)는 본시 내인의 치병소(治病所)였으며, 그 위치는 "前壽進宮內人治病所東中門外中署典洞第四十統六戶"라 하고 있다. 수진궁의 부속건물 중에 내인의 치병소가 있었음은 내인의 거처가 수진궁 내부에 위치하였다는 추정을 뒷받침한다.

54) 金容燮, 「司宮庄土의 管理: 導掌制를 中心으로」, 『史學硏究』, 제18집(1964), 575~576쪽.

55) 내수사 및 궁방의 조직을 내무계통과 외무계통으로 나누는 것은 당대의 인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다. 예컨대, 『毓祥宮各年未下及內外宮屬料未下件』(奎 26115)에서도 궁속을 '內外'로 구분하고 있다.

56) 金容燮, 앞의 논문; 裵英淳, 「韓末 司宮庄土에 있어서의 導掌의 存在形態」, 『韓國史硏究』, 30(1980), 107~129쪽.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자.

수진궁의 내무계통은 내수사의 경우와 달리 법전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壽進宮謄錄』이나 『壽進宮上下冊』 등을 종합함으로써 <표 6>과 같이 직제의 복원을 시도할 수 있다. 내무계통에는 ① 당상·상궁이하내인(堂上·尙宮以下內人), ② 소임, ③ 노·비자(奴·婢子)의 3층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마름[舍音]·산직(山直) 등이 외무계통을 구성하고 있었다. 내무계통 3층 구조상의 대표적 직책에 관해서만 간략히 해설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수진궁의 직제

분류		직책	별칭 또는 실례
내무계통	堂上	次知	大次知·大監·宅·堂上 宅
	尙宮以下內人	尙宮	提調尙宮·提調·尙宮
		內人	祠堂內人·宮內人
	所任	小次知	令監
		掌務	首掌務·掌務
		稼宮	
		書員	
	奴·婢子	庫直以下奴子	庫直奴子·大廳直奴子
			奴子
		婢子	
		本房奴·婢子	寺洞本房奴子·安峴本房奴子·社洞本房奴子
			寺洞本房婢子
		其他	熟手奴子·盖匠奴子·木手奴子·泥匠奴子·色掌奴子
	其他	廳直·綾羅匠·舊阿只	
외무계통	舍音·山直	舍音	各墓所舍音·豆毛浦舍音·陽根柴場舍音
		山直	鐵串坪直·三峰山柴場山直·陽根柴場山直

출전: 『壽進宮謄錄』, 『壽進宮上下冊』, 『壽進宮鄕味冊』(奎 19103), 『鄕味撥記』(奎 22069).

57) 和田一郎, 앞의 책, 124쪽. "그 직원으로서는 내수사에 전수, 별좌, 부전수, 별제, 전회, 전곡, 전화를 두었고, 다른 각궁에는 대차지(大次知), 소차지, 장무, 숙궁(稼宮), 서원 등을 두었으며, 또 상궁[女官], 고직, 노자 등을 배치하여 제사 및 수지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였는데."

58) 내수사의 직제에 관해서는 趙映俊, 「19世紀後半 內需司와 市廛의 去來實態」, 『서울학연구』, 제31호(2008c), 174~176쪽에 소개된 바 있다.

우선 최상단에 위치한 당상(堂上)에 대하여 살펴보자. 관찬 연대기류나 궁방 관련 자료에서 당상, 차지, 중사(또는 중관) 등의 표현은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앞서 살펴본 김용섭의 소개에서는 이들 3자가 마치 별개의 직책인 것처럼 나열되어 있지만, 이들은 사실상 모두 같은 직책에 해당한다.[59] 수진궁 내부의 직제에 공식적으로 당상관이 존재한 것은 아니며, 당상인 환관에 의해 각궁이 관할되고 있었던 것이다.[60] 때로는 차지를 일컬어 '대감(大監)'이라고도 하였으며,[61] 『壽進宮上下冊』에 등장하는 "宅沉醬次", "宅以下所任奴子" 등의 '댁[宅]'이라는 표현도 모두 당상댁[堂上 宅]을 지칭하는 것이다.

다음은 상궁이하내인(尙宮以下內人)이다. 상궁은 당상처럼 수진궁 외부의 인물로서 수진궁을 관할하고 있었는데,[62] 소관전궁 소속의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다. 내인은 일반적으로는 전궁의 내외소주방(內·外燒廚房), 생것방[生物房], 침방(針房), 수방(繡房) 등에 속한 궁녀들로 이해된다. 하지만 수진궁에서는 '祠堂內人' 또는 '宮內人'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향업무 등 수진궁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63]

소차지는 실무상의 최고 직책으로서, 차지를 '대감'이라 한 것처럼 '영감(令監)'이라 칭하기도 했다.[64] 소차지는 차지와 더불어 회계장부의 작성 및 결재에 초본(草本) 단계부터 관여하고 있었다.[65] 『壽進宮上下冊』에서는 소차지부터 장무, 숙궁, 서원까지를 "小次知以下所任"이라고 표현하고 있다.[66] 소임이 근무한 공간이 궁내의 서제소임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이들 소임은 마치 지방관아의 아

59) 즉 『壽進宮謄錄』의 곳곳에서 '明禮宮堂上', '壽進宮堂上'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4궁의 당상은 내시 중에서 해궁(該宮)을 관할한 차지를 가리킨다. 이에 '次知中官' 또는 '次知內官'이라고도 한다. 趙映俊, 앞의 논문(2008b), 195쪽.

60) 『顯宗改修實錄』 4년(1663) 9월 5일; 和田一郎, 앞의 책, 124쪽. "대차지는 반드시 환관으로서 이를 충당하도록 하였다."

61) 『壽進宮謄錄』(宙), 1854년(甲寅) 11월 28일: 「甘結」. "以上大監."

62) '외부'의 인물이라는 근거로는 『壽進宮上下冊』의 삭료(朔料) 지급내역에서 당상과 상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63) 金用淑, 앞의 책, 11~12쪽의 "왕의 사친의 사당을 지키는 여인들"이라는 표현에 해당한다.

64) 『鄕味撥記』.

65) 趙映俊, 앞의 논문(2008b), 195쪽.

66) "小次知以下所任二十五" 등으로 인원수까지 적기도 했다. 소차지와 장무 등을 소임이라 하였음은 『壽進宮鄕味冊』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전(衙前)과도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67] 즉 소임은 궁의 운영에 관계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하였는데, 재산의 관리, 장부의 작성 등을 포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68]

"소차지 이하는 내인[女官]의 일족인 액정(掖庭=員役) 중의 세력있는 자 또는 그 자손이 독점"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69] 4궁의 소임은 대체로 상궁이나 내인과 혈연관계에 있는 자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액정 중의 세력있는 자"라는 표현은 액정서(掖庭署)와 4궁 간에 인원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시사하는데, 1818년에 장무 방성행(方聖行)이 액정서의 사알(司謁) 직책으로 옮겨 가는 실례도 확인된다.[70] 내인의 일족이 수진궁의 소임이었던 사례로는 20세기 초반의 장무 안필주(安弼柱)가 제조(提調) 안상궁의 남동생[男弟]이었음을 들 수 있다.[71] 또한 역시 1818년에 숙궁 김갑득(金甲得)이 유탈(有頉)하자 그를 대신하여 아들 김규성(金奎聲)을 서원으로 임명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소임의 직책은 세습되기도 하였다.[72]

끝으로 노자와 비자는 수진궁의 입역노비(立役奴婢)에 해당하는 하예들이다. 궁방의 납공노비(納貢奴婢)인 내노비(內奴婢)가 폐지된 것은 1801년이지만, 입역노비의 노자, 비자라는 호칭은 갑오개혁기까지 유지되고 있었다. 노자와 비자가 각기 담당한 업무는 『壽進宮上下冊』의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전술한 것처럼 고직노자(庫直奴子)는 단순한 '창고지기'라기보다는 "庫直以下奴子"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하예들의 우두머리격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물자의 조달 업무인 무역(貿易)에도 종사하였다.[73] 기타 다수의 노자들은 정해진 업무가 있었다기보다

67) 小田省吾, 앞의 논문, 76쪽.

68) 숙궁과 서원도 사무 등 제반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주로 제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수진궁에서 제사의 기능이 별도로 성립하는 '祭享新定式'(『各祠堂各墓所祭享新定式謄錄』)이 시행된 이후에 『壽進宮上下冊』에서 숙궁과 서원이라는 직책이 사라지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趙映俊, 「19世紀 王室財政의 危機狀況과 轉嫁實態: 壽進宮 財政의 事例分析」, 『경제사학』, 제44호(2008d), 59쪽, 71쪽.

69) 『朝鮮ノ保護及併合』(朝鮮總督府, 1918), 130~131쪽.

70) 『壽進宮謄錄』(地), 1818년(戊寅) 5월 일. "本宮掌務方聖行司謁移差代林得圓掌務差下."

71) 『壽進宮未下金請求』(奎 21767), 「壽進宮에 人額의 鄕味를 挪用한 摠計에 分排票」. 『壽進宮謄錄』에 보이는 1860~80년대의 소차지 안석주(安石柱)도 이들과 혈연관계에 있었던 자로 짐작된다.

72) 『壽進宮謄錄』(地), 1818년(戊寅) 5월 일. "稼宮金甲得有頉代其子奎聲書員差下."

73) 趙映俊, 앞의 논문(2008d), 73쪽.

는 좌견노자(佐牽奴子), 차래노자(借來奴子), 배행노자(陪行奴子), 부축노자[扶囑奴子], 교군노자(轎軍奴子), 수직노자(守直奴子), 봉서노자(封書奴子), 겪이노자[役只奴子] 등의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궁의 필요에 따라 단순한 업무를 번갈아 가며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비자도 마찬가지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수식비자(首飾婢子), 용정비자(舂精婢子), 주모비자(酒母婢子), 향로비자(香爐婢子), 수라거행비자(水刺擧行婢子) 등 업무 명칭이 붙은 표현들이 확인된다.

2. 소임의 근속기간과 연령구성

명부(名簿)가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수진궁 궁속의 명단이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알기는 힘들지만, 『壽進宮上下冊』에 등장하는 출입 정보, 즉 '신차(新差)', '가출(加出)', '신사(身死)' 등의 표현을 통해 추적하거나, 『壽進宮謄錄』의 임면 기록을 통해 짐작할 수는 있다.[74] 특정한 사유에 의해 공석이 발생하였을 때 새로운 인물로 대체하여 임명하였는데, 이를 테면 앞서 살펴 본 방성행이나 김갑득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서원에서 장무로 승차(陞差)하는 경우에도 수본(手本)을 작성하였고,[75] 임명의 근거는 주로 전교에 의한 것[因傳敎]이었다. 소임이 조직 내에서 대류(對流)하는 관계에 있었음은, 원빈(元嬪) 묘소 표내(標內)의 소나무[松木] 세 그루[株]를 작벌한 것에 대한 치죄의 성격으로서 소차지 유성민(兪聖民)을 숙궁으로 강정(降定)하는 대신, 장무 조언기(趙彦基)를 소차지로 승차하고, 숙궁 서윤국(徐潤國)을 장무로 승차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76]

수진궁 소임의 근속기간과 연령구성에 관한 정보는 얻을 수 없지만, 명례궁에 대해서는 소임 이상의 연명부인 『座目』(奎 18541)이 현존한다. 여기에는 1843년부터 1895년 사이에 명례궁에서 당상, 소차지, 장무, 서원의 직책에 있었던 사람들의 직책, 성명, 도임일(到任日), 자(字), 생년, 본관이 수록되어 있다.[77]

---

74) 또한 1850년대 이후부터는 『壽進宮謄錄』의 일부 연도에 특정 의례의 집행 후에 상격(賞格)을 지급한 목록인 「壽進宮別單」이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각 직책의 인원에 대한 실명이 모두 수록되어 있어서 단기적인 인원 변동을 추적할 수 있다. 趙映俊, 앞의 논문(2008d), 57쪽.

75) 『壽進宮謄錄』(地), 1821년(辛巳) 2월 일: 「壽進宮手本」. "本宮書員文潤行陞差掌務."

76) 『壽進宮謄錄』(黃), 1832년(壬辰) 11월 17일. "元嬪墓所標內松木三株斫伐事 下敎內小次知兪聖民降定稼宮掌務趙彦基小次知陞差稼宮徐潤國掌務陞差."

우선 명례궁의 당상으로는 3명이 수록되어 있는데, 정지량(鄭之良)은 1873년 5월에,[78] 황수연(黃壽延)은 1880년 10월에, 홍택주(洪宅柱)는 1906년 윤4월에 도임하였다.[79] 정지량은 7년여, 황수연은 25년여 정도의 기간 동안 명례궁 당상으로 있었다. 당상의 연령에 관한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음으로 소차지는 1833년생으로서 1870년에 도임한 최학규(崔鶴圭) 1명이 1895년에 이르기까지 25년 동안 장기적으로 근속하였다.[80] 또 장무는 연인원 55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들 중에서 난외두주(欄外頭註)에 '선(仙)'으로 적혀 있는 사망자가 16명이고, '출(出)'로 적혀 있는 중도 탈락자가 18명이며, 나머지가 21명이다. '선'이 아닌 '출'의 숫자가 더 많다는 점은 궁방의 소임이 반드시 종신직은 아니었음을 뜻한다.[81] '선'이나 '출'에 대해서는 시기를 적지 않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탈락시기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기는 어렵고, 단지 수정일을 기준으로 한 1879년 5월의 현황과 최종 도임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1895년의 현황을 알 수 있을 뿐이다. 『座目』을 1879년과 1895년 각각에 대하여 재구성하여 정리하면 <표 7>, <표 8>과 같다.

<표 7> 명례궁 좌목 (1879년 현재)

직책	성명	도임년	생년	연령(도임)	근속년수	연령(1879년)
당상	鄭之良	1873(癸酉)			6	
소차지	崔鶴圭	1870(庚午)	1833(癸巳)	37	9	46
장무	南壽喆	1864(甲子)*	1825(乙酉)	39	15	54
장무	朴鎭豊	1843(癸卯)	1830(庚寅)	13	36	49
장무	李根植	1851(辛亥)	1829(己丑)	22	28	50
장무	梁　植	1852(壬子)	1813(癸酉)	39	27	66
장무	千應銖	1860(庚申)	1831(辛卯)	29	19	48

77) 1879년 5월에 수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추후의 기록이 더해져서 실제로는 1895년까지의 정보를 담고 있다. 당상의 경우, 1906년의 도임자(到任者)까지 알 수 있다.

78) 『祭謄錄』(奎 13010)에 의하면 정지량은 정2품 상선(尙膳)이었다.

79) 정지량이 황수연으로, 황수연이 홍택주로 대체된 이유는 각각 '선(仙)'과 '출(出)'이었다.

80) 『座目』의 정보는 1895년까지로 한정되므로, 최학규가 그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명례궁 소차지였다고 볼 수도 있으며, 그렇다면 최학규의 근속기간은 25년 이상이 된다. 하지만 『官報』(1895년[개국504년] 7월 26일자 호외)를 통해 갑오개혁 과정에서 최학규가 회계원 출납사장(주임관 3등)으로 승서(陞敍) 되었음을 감안하면, 그의 명례궁 소차지로서의 근속기간을 25년으로 확정할 수 있다.

81) 도임자 중에는 '중래(重來)'한 경우도 있다. 즉 '출'하였다가 다시 궁의 소임으로 복귀하기도 했던 것이다.

장무	尹東善	1876(丙子)*	1833(癸巳)	43	3	46
장무	南俊喆	1860(庚申)	1844(甲辰)	16	19	35
장무	吳永烈	1861(辛酉)	1850(庚戌)	11	18	29
장무	姜在悳	1862(壬戌)	1839(己亥)	23	17	40
장무	朴喜大	1865(乙丑)	1848(戊申)	17	14	31
장무	金啓成	1865(乙丑)	1852(壬子)	13	14	27
장무	元洪錫	1867(丁卯)	1850(庚戌)	17	12	29
장무	李壽煥	1868(戊辰)	1853(癸丑)	15	11	26
장무	李德鉉	1869(己巳)	1854(甲寅)	15	10	25
장무	金鍾健	1870(庚午)	1857(丁巳)	13	9	22
장무	張元錫	1873(癸酉)	1865(乙丑)	8	6	14
장무	張準奎	1874(甲戌)	1835(乙未)	39	5	44
장무	安基鎬	1875(乙亥)	1843(癸卯)	32	4	36
장무	朴壽永	1875(乙亥)	1857(丁卯)	18	4	22
장무	文世元	1876(丙子)	1821(辛巳)	55	3	58
장무	尹昌訥	1877(丁丑)	1855(乙卯)	22	2	24
장무	朱熙敬	1878(戊寅)	1858(戊午)	20	1	21
장무	李重億	1878(戊寅)	1856(丙辰)	22	1	23
장무	朴禛永	1878(戊寅)	1859(己未)	19	1	20
장무	南奎喆	1878(戊寅)	1856(丙辰)	22	1	23
장무	安錫胤	1878(戊寅)	1850(庚戌)	28	1	29
장무	尹在協	1879(己卯)	1834(甲午)	45	0	45
장무	金在淵	1879(己卯)	1843(癸卯)	36	0	36
평균				25.1	10.0	35.1

출전: 『座目』(奎 18541).

주: 근속년수와 연령은 필자의 계산에 의함. 평균 계산에서 당상은 제외하였음. * 중래.

<표 8> 명례궁 좌목 (1895년 현재)

직책	성명	도임년	생년	연령(도임)	근속년수	연령(1895년)
당상	黃壽延	1880(庚辰)			15	
소차지	崔鶴圭	1870(庚午)	1833(癸巳)	37	25	62
장무	朴鎭豊	1843(癸卯)	1830(庚寅)	13	52	65
장무	吳永烈	1861(辛酉)	1850(庚戌)	11	34	45
장무	李德鉉	1869(己巳)	1854(甲寅)	15	26	41
장무	張準奎	1874(甲戌)	1835(乙未)	39	21	60
장무	安錫胤	1878(戊寅)	1850(庚戌)	28	17	45
장무	尹在協	1879(己卯)	1834(甲午)	45	16	61
장무	安應柱	1879(己卯)	1861(辛酉)	18	16	34

장무	河肯一	1881(辛巳)	1852(壬子)	29	14	43
장무	白元圭	1881(辛巳)	1841(辛丑)	40	14	54
장무	金相鶴	1881(辛巳)	1866(丙寅)	15	14	29
장무	安奭煥	1885(乙酉)	1867(丁卯)	18	10	28
장무	金浩性	1885(乙酉)	1870(庚午)	15	10	25
장무	金甯基	1886(丙戌)	1856(丙辰)	30	9	39
장무	梁時赫	1888(戊子)	1866(丙寅)	22	7	29
장무	尹定熙	1888(戊子)	1852(壬子)	36	7	43
장무	安錫寅	1889(己丑)	1862(壬戌)	27	6	33
장무	金相允	1889(己丑)	1873(癸酉)	16	6	22
장무	郭潤用	1890(庚寅)	1856(丙辰)	34	5	39
장무	安商烈	1891(辛卯)	1880(庚辰)	11	4	15
장무	文在學	1894(甲午)	1857(丁巳)	37	1	38
장무	韓悳淳	1895(乙未)	1870(庚午)	25	0	25
평균				25.5	14.3	39.8

출전: 『座目』(奎 18541).
주: 근속년수와 연령은 필자의 계산에 의함. 평균 계산에서 당상은 제외하였음.

우선 양 시점의 인원수를 검토해 보면, 1879년은 당상 1명, 소차지 1명, 장무 38명, 1895년은 당상 1명, 소차지 1명, 장무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1879년에서 1895년까지 16년이 경과하는 동안 38명의 장무 중에서 6명만이 1895년까지 명례궁에 남아 있었고, 여기에 15명이 신입하여 인원의 순변동분은 17명의 감소로 나타난다. 1895년에 장무의 수가 감소하는 현상은 갑오개혁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소임의 생년과 도임년을 대조하여 도임시 연령, 근속기간, 기준년 연령을 각각 계산해 보았다. 도임시 연령은 8세에서 55세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82] 1879년과 1895년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평균연령은 25세였다. 근속기간은 박진풍(朴鎭豊)처럼 52년에 이르는 장기인 경우도 있으나, 평균적으로는 1879년 기준으로 10년, 1895년 기준으로 14년이므로, 대체로 10년 남짓 근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준년의 평균 연령은 1879년과 1895년에 대해 각각 35세와 39세인 것으로

82) 도임 연령이 8세, 11세 등으로 상당히 어린 경우가 발견되는데, 이는 '수습' 기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서, 시전 상인의 경우 24세 이전에 '아동(兒童)'으로서 도중(都中)에 가입하여 일정한 수습 기간을 거치게끔 되어 있었다. 고동환, 「시전 상인의 조직과 도성 문화」, 국사편찬위원회(편), 『거상, 전국 상권을 장악하다』(두산동아, 2005), 135~136쪽.

보아, 대체로 30대 후반이었다. 즉 명례궁의 소차지와 장무는 평균적으로 20대 중반에 도임하여 10여년을 근무한 30대 후반의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연령, 근속기간 등 명례궁의 인원정보는 4궁의 궁속들에 대해 대체로 비슷하였을 것이다.

3. 궁속의 거주상황

다음으로 궁속의 거주상황에 대해 고찰해보자. 궁속의 거주지는 제실채무 정리 과정에서 양산된 미하금(未下金) 청구서류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소를 통해 일차적으로 확보된다. 청구인의 직책은 고직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은 궁 외부에 독자의 주거를 확보하고 있었다. 내인이 궁내에 거주하면서 업무에 종사하였던 것과는 달리 소임, 고직 등의 궁속은 자가(自家)에 거처하면서 궁에 출근하여 서제소에서 일하고 업무가 종료되면 퇴근하는 형식이었던 것이다.

예컨대 수진궁 궁속의 거주상황은 『壽進宮未下金請求』에서 확인된다. 1905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대체로 1880년대부터 190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조상궁과 대·소차지를 비롯한 85명 궁속들의 거주지 정보가 부(部)—동(洞)—통(統)—호(戶)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으며,[83] 이들을 소임 이상과 고직 이하로 구분하여 부별(部別) 거주지 분포를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수진궁 궁속의 거주지 분포

행정구역	소임 이상		고직 이하		계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중부(中部)	11	39.3	38	66.7	49	57.6
서부(西部)	8	28.6	9	15.8	17	20.0
북부(北部)	4	14.3	8	14.0	12	14.1
남부(南部)	5	17.9	0	0	5	5.9
동부(東部)	0	0	2	3.5	2	2.4
계	28	100	57	100	85	100

출전: 『壽進宮未下金請求』, 「壽進宮에 人額의 鄕味를 挪用한 摠計에 分排票」.

83) 방(坊)과 계(契)는 적지 않고 있다.

수진궁 궁속은 한성부 5부에 두루 분포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수진궁이 소재한 지역인 중부에 집중하여 살고 있었다(57.6%). 중부에의 집중도는 소임 이상보다 고직 이하에서 더 높았다(66.7%>39.3%). 특히 고직 이하의 궁속들은 중부 중에서도 수동(壽洞), 전동(典洞), 익동(益洞)에 밀집하여 거주하였다.[84] 수진궁 궁속의 거주상황은 1903년과 1906년의 호적에서도 확인된다.[85] 수진궁 궁속은 광무호적의 직업란에 '壽進宮掌務', '壽進宮庫直', '壽進宮大廳直', '壽進宮貿易', '壽進宮入役', '壽進宮役人' 등의 형식으로 근무처와 직책을 적었다.[86] 장무, 고직, 대청직, 무역 등은 당해 직책을 그대로 기입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으나, 입역이나 역인이라고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인물의 직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기 어렵다. 하지만 『壽進宮未下金請求』와 대조해 보면, 이들 전원이 고직 이하의 직책에 있었던 자들임이 확인된다. 수진궁의 고직이나 무역노(貿易奴)가 호적의 직업란에 스스로 해궁의 궁속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은 이들이 자신의 직책을 전업적(專業的)으로 영위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87]

1906년의 호적에서 자신의 직업을 수진궁 궁속으로 기재한 자들 중 대다수는 고직 이하에 해당하는데,[88] 주로 수동이나 전동에 거주하고 있었고, 대부분 전거지(前居地)도 '본동(本洞)'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줄곧 수진궁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수진궁 궁속 중 고직 이하는 수진궁으로부터 반경 150m 이내에 밀집하여 거주하였다.[89] 그 중에서 일부는 <그림 2>에 보이는 부속

84) 수동 19명, 전동 8명, 익동 6명. 수동[壽進洞]이나 전동[典醫監洞]은 모두 수진궁의 인근으로서, 수진궁 및 그와 인접한 의금부(義禁府=禁府)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다. <그림 1> 참조.

85) 『韓國戶籍成冊』(京都大學 所藏). 소위 광무호적(光武戶籍)이라고 하는데, 이전 시기의 호적과는 달리 직업란(職業欄)을 두고 있었다.

86) 광무호적에서 궁속의 직업기재는 다른 궁방에서도 마찬가지 양식이었다. 이를 테면, '(內需司)前別提', '明禮宮入役', '龍洞宮掌務', '於義宮所任' 등이다.

87) 궁속의 직책이 전업적이라 할 지라도 그것이 세습적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권의 추구에 따라 진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이르다. 마찬가지로 이들의 물자 조달 권리(또는 업무)가 마치 공인권(貢人權)이나 도장권(導掌權)과 같이 시중에서 유통되거나 매매될 수 있는 성격을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19세기 말에 분원(分院)에 관계한 공인(貢人) 지씨(池氏)가 명례궁 고직이 될 기회를 놓친 것을 한탄한 사례가 있으므로[『國譯 荷齋日記 (一)』(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2005), 201쪽], 향후 추가적인 고찰을 요한다.

88) 소임 이상 궁속의 성명을 광무호적에서 찾기 어려운 이유는 현존하는 자료가 중부 등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인 행랑(行廊)을 주거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90] 행정구역상 수진궁내계(壽進宮內契)를 구성한 자들은 대체로 수진궁 궁속과 그들의 가족이었다. 조선후기 서울의 행정구역은 잘 조직된 국역체제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는데,[91] 한말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러한 성격이 일부 잔존하였음을 보여준다.[92]

Ⅵ. 맺음말

궁방에 대한 현재까지의 인식은 궁방 그 자체에 대한 관심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었다. 그 결과, 궁방에 대한 심층적 이해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식민지기 초기에 형성된 인식 수준에서 지평이 전혀 확장되지 못한 채로 한 세기가 경과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동안은 궁방의 개념에 대한 정의, 궁방의 적절한 분류 등에 있어서도 혼선을 피할 수 없었다. 조선후기의 사회변동을 농업, 상업, 재정의 상호관련 속에서 입체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당대의 물류가 집결된 서울에서의 궁방의 존재형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왕실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기관이라는 기능적 측면, 즉 본연의 업무에 초점을 맞추어 조선후기의 궁방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궁방 중에서도 특히 내수사, 수진궁, 명례궁, 용동궁, 어의궁의 1사4궁이 왕실의 재정을 전담한 내탕으로서 주목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다. 이들 1사4궁은 각기 별개의 궐내(闕內) 전궁에 대한 물자 조달 업무를 맡는 형식으로 기능을 분담

89) 수진궁의 위치와 한성부의 행정구역을 함께 고려하여, 여러 고지도와 현대의 실측지도 또는 위성사진을 비교해 보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90) 이는 마치 지방 양반가의 주가(主家)를 둘러싸고 입역노비들의 협가(挾家)가 배치한 것과 같은 형상이다. 李榮薰, 『朝鮮後期社會經濟史』(한길사, 1988), 346~356쪽.

91) 고동환, 「조선후기 漢城府 행정편제의 변화: 坊·里·洞·契의 변동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제11호(1998), 67~78쪽.

92) 광무호적을 활용한 기존 연구에서 특정 지역에 상인[市民]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특정 지역에 농민이 밀집하여 거주함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 金泳謨, 『韓國社會階層硏究』(一潮閣, 1982), 145~150쪽; 조성윤, 「조선후기 서울 주민의 신분 구조와 그 변화: 근대 시민 형성의 역사적 기원」,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2), 134~136쪽; 조성윤, 「조선후기 서울주민의 신분 및 직업구성」, 서울학연구소(편), 『조선후기 서울의 사회와 생활』(서울시립대학교부설 서울학연구소, 1998), 209~215쪽.

하고 있었다. 내수사는 대전의 내탕이었지만, 나머지 4궁은 왕실 구성의 변화에 따라 소관전궁이 윤회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즉, 종래와 같이 어느 궁은 어느 전의 속궁이라는 형식의 일률적 평가는 성립할 수 없으며, 1사4궁이 비록 각기 독립채산 방식으로 궁방전을 보유하고 재정 및 회계 업무를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 전체가 왕실의 내탕으로서 통합적으로 조정되는 대상이었던 것이다.

1사4궁은 도성 내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왕실 내탕으로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다. 궁궐 및 시전과의 인접성을 기반으로 재정 운영에 따르는 거래비용의 절감에 일조하였다는 점에서 사가(私家)와 다름없이 지방에 산재하였던 다수의 방(房)과의 차별성이 부각된다. 내부 공간도 주로 사무, 회계 및 저장이라는 재정관리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는 1사4궁이 추상적 회계단위가 아닌 실체로서 존재한 왕실재정의 운영주체였음을 보여준다.

조직에 있어서도 비록 법전에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내수사는 예외적임), 계층별로 업무가 분담되는 형식의 정연한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사궁(司宮)의 관리를 담당한 상부 계층은 대체로 내시와 상궁이었으며, 실무자인 소임은 상부 계층의 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평균적으로 2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의 인물들이었다. 잡역을 담당한 하부 계층은 노비와 유사한 형태로 존재하였다. 이들은 궁의 내부 또는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일종의 국역체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에서 공간 및 조직 구성을 통해 확인한 조선후기 궁방의 실체는 내탕을 포함한 왕실재정의 운영을 살피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례 연구가 축적된다면 개별 궁방의 운영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궁방 상호간의 의존관계, 궁방의 수취와 지출 구조를 중심으로 한 경제의 전국적 순환구조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 싶다.

참고문헌

『太宗實錄』;『中宗實錄』;『仁祖實錄』;『顯宗改修實錄』;『肅宗實錄』;『景宗實錄』;『英祖實錄』;『正祖實錄』;『純祖實錄』;『承政院日記』;『日省錄』;『增補文獻備考』.

『家舍에 關ᄒᆞᆫ 照覆文書』(奎 20945);『各祠堂各墓所祭享新定式謄錄』(奎 19290);『各處商民等請願書』(奎 21072);『結戶貨法稅則』(奎 古5127-10);『景祐宮ニ供給セシ物品代金請求ノ件』(奎 20118);『大東地志』(奎 古4790-37);『首善全圖』(國中 한古朝61-47);『壽進宮謄錄』(奎 18980);『壽進宮未下金請求』(奎 21767);『壽進宮上祭謄錄』(奎 19289);『壽進宮上下冊』(奎 19030);『壽進宮鄕味冊』(奎 19103);『輿地圖』(奎 古4709-78);『毓祥宮各年未下及內外宮屬料未下件』(奎 26115);「麟坪大君坊全圖」(奎 古軸4655-6);『祭謄錄』(奎 13010);『帝室債務整理之現況』(奎 22157);『座目』(奎 18541);『鄕味撥記』(奎 22069).

『官報』, 1895年(開國 504年) 7月 26日字 號外.
『國譯 荷齋日記 (一)』. 서울: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2005.
『宮闕志』(第2版). 서울: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2000.
『궁집[宮家]: 韓國의 전통가옥 14』. 대전: 문화재청, 2006.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제V집(史部2)』. 서울: 서울大學校圖書館, 1982.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제VI집(史部3)』. 서울: 서울大學校圖書館, 1983.
『都城大地圖』.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2004.
『東國輿地備攷』(第2版). 서울: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2000.
『龍洞宮謄錄』. 서울: 正文社, 1982.
『漢京識略』(第2版). 서울: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2000.
『韓國戶籍成冊』(京都大學 所藏).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고동환,「조선후기 漢城府 행정편제의 변화: 坊·里·洞·契의 변동을 중심으로」.『서울학연구』 제11호, 1998, 37~81쪽.
고동환,「시전 상인의 조직과 도성 문화」. 국사편찬위원회(편),『거상, 전국 상권을 장악하다』. 서울: 두산동아, 2005, 87~167쪽.
金泳謨,『韓國社會階層硏究』. 서울: 一潮閣, 1982.
金用淑,「明禮宮 硏究: 그 始源 糾明을 중심으로」.『서울문화』 제3집, 1997, 80~104쪽.
金用淑,『朝鮮朝 宮中風俗 硏究』. 서울: 一志社, 1987.
金容燮,「司宮庄土의 管理: 導掌制를 中心으로」.『史學硏究』 제18집, 1964, 573~626쪽.
金載昊,「韓末 宮房田의 地代:『國有地調査書抄』의 分析」. 김홍식(외),『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 서울: 민음사, 1997, 249~296쪽.

리진호,『한국지적史』. 서울: 바른길, 1999.
朴廣成,「宮房田의 硏究: 그 展開에 따른 民田侵及과 下民侵虐을 中心으로」.『(仁川敎育大學) 論文集』 제5집, 1970, 1~72쪽.
裵英淳,「韓末 司宮庄土에 있어서의 導掌의 存在形態」.『韓國史硏究』 30, 1980, 107~129쪽.
宋洙煥,『朝鮮前期 王室財政 硏究』. 서울: 集文堂, 2002.
梁擇寬,「朝鮮前期 王室의 土地所有와 經營」.『韓國史論』 53, 2007, 13~60쪽.
元永喜,『韓國地籍史』(三訂版). 서울: 新羅出版社, 1981.
李榮薰,『朝鮮後期社會經濟史』. 서울: 한길사, 1988.
李政炯,「17・8세기 궁방의 민전 침탈」.『釜大史學』 제20집, 1996, 79~121쪽.
李燦・楊普景,『서울의 옛 地圖』. 서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1995.
이현진,「조선 영조대 육상궁의 조성과 그 운영」. 조선후기~대한제국기 양안의 정리 및 해설팀 중간발표회(『조선후기 宮房田과 宮房量案』). 서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8. 6. 24, 96~115쪽.
조성윤,「조선후기 서울 주민의 신분 구조와 그 변화: 근대 시민 형성의 역사적 기원」.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조성윤,「조선후기 서울주민의 신분 및 직업구성」. 서울학연구소(편),『조선후기 서울의 사회와 생활』. 서울: 서울시립대학교부설 서울학연구소, 1998, 192~216쪽.
趙映俊,「18世紀後半~20世紀初 宮房田의 規模, 分布 및 變動」.『朝鮮時代史學報』 44, 2008a, 175~223쪽.
趙映俊,「宮房 會計帳簿의 體系와 性格」.『古文書硏究』 32, 2008b, 175~201쪽.
趙映俊,「19世紀後半 內需司와 市廛의 去來實態」.『서울학연구』 제31호, 2008c, 167~201쪽.
趙映俊,「19世紀 王室財政의 危機狀況과 轉嫁實態: 壽進宮 財政의 事例分析」.『경제사학』 제44호, 2008d, 47~80쪽.
趙映俊,「19世紀 王室財政의 運營實態와 變化樣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주남철,『궁집[宮家]』. 서울: 일지사, 2003.
許英桓,『定都 600年 서울 地圖』. 서울: 汎友社, 1994.

『京城府史: 第1卷』. 京城: 京城府, 1934.
『臨時財産整理局事務要綱』. 京城: 朝鮮總督府 臨時財産整理局, 1911.
『朝鮮ノ保護及併合』. 京城: 朝鮮總督府, 1918.
小田省吾,「德壽宮略史」.『朝鮮』 제234호, 1934, 39~103쪽.
和田一郎,『朝鮮土地地稅制度調査報告書』. 京城: 朝鮮總督府, 1920.

국 문 요 약

현재까지 조선후기 궁방에 대한 인식은 식민지기 일본인의 견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상황을 탈피하고자 궁방의 실체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를 행하였다. 궁방에 대한 기존 인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궁방 및 궁방전 연구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당대의 물류가 집결된 서울에서의 궁방의 존재형태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선후기 사회변동을 농업, 상업, 재정의 상호 관련 속에서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우선 궁방에 대한 정의와 분류를 새로이 함으로써 특히 왕실의 재정을 담당한 내탕으로서 내수사, 수진궁, 명례궁, 용동궁, 어의궁의 1사4궁을 주요한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내수사는 대전의 내탕 기능을 불변으로 유지하였으나, 나머지 4궁은 왕실 구성의 변화에 따라 소관전궁이 윤회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1사4궁은 도성 내에 위치하였기에 왕실 내탕으로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으며, 내부공간도 재정관리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조직에 있어서도 계층별로 업무가 분담되는 형식의 정연한 체제를 갖추고 있었으며, 궁의 관리를 담당한 중상층은 대체로 내시와 상궁 또는 그 일족에 의해 장악되고 있었다. 하층 궁속들은 궁의 내부 또는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서울의 주민으로서 국역체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다.

◉ 투고일 : 2008. 7. 14. ◉ 심사완료일 : 2008. 8. 28.

◉ 주제어(keyword) : 궁방(kungbang), 내탕(naet'ang), 1사4궁(ilsasagung), 왕실재정(Royal finance), 서울 주민(citizens of the capital, Seoul).